의 안 번 호	제 199 호
의 결	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심 기 보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5월 31일

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심기보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9 발의연월일 : 2019년 5월 31일

발 의 자 : 심기보, 박상돈, 박형용,

육미선, 이상욱, 최경천,

이상식

1. 제안이유

O 법제처의 법령 입안·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어표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1조(목적)에 사용된 약어 표기를 삭제하고 제2조로 이동 **(안 제1, 2조)**

나. 도지사 및 충청북도에 대한 약어 표기 사용 (안 제2, 3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
나. 협 의 :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

다.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충청북도고문변호사(이하 "고문변호사"라 한다)"를 "충청북도 고문변호사"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"를 "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"로, "고문변호사"를 "충청북도 고문변호사(이하 "고문변호사"라 한다)"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"(업무)"를 "(업무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"도"를 "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충청북도고</u> 문변호사(이하 "고문변호사"라 한 <u>다)</u>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충청북도 고</u> <u>문변호사</u>
제2조(위촉) ① 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 호사를 위촉할 수 있고, 「변호사 법」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비위 등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.	제2조(위촉) ① <u>충청북도지사(이하"</u> 도지사"라 한다)는 개업 중인 변 호사 중에서 <u>충청북도 고문</u> 변호사(이하 "고문변호사"라 한 다)
제3조(업무)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(생 략) 2. <u>도</u> 가 위임하는 쟁송사건 ② (생 략)	제3조(업무 등) ①